문서번호	도시디자인과-3427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35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미녀	김우익	박영서	이기배	김경호	03/15 김기동
협 조					

- 주민과 함께 하는 -

2016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광진구 GWANGJIN-GU

도 시 관 리 국

(도 시 디 자 인 과)

– 주민과 함께 하는 –

2016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추 진 배 경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전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한계로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 현수막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서울시 수거보상제 방침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2455(2016.2.24)

〈 그간 추진사항 〉

① 2015.10.19 :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시달

② 2015.11.5 : 광진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수립

③ 2015.11.~12. : 수거보상제 사업 시행

〈2015년 추진실적〉 (단위 : 매, 천원)

구 분			보상금액	행정처분	
계	일반형	족자형		건 수	금 액
13,883	5,870	8,013	19,753	308	33,116

※ 기타보상금 21,000천원 중 19,753천원 집행(집행률94%)

Ⅱ 추 진 방 향

- 시와 자치구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불법 현수막 정비로 쾌적한 거리조성
- 불법 현수막 정비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애향심 고취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으로 불법 현수막 감소 및 구 세외수입 증대 기여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3. ~ 12.
- **사업대상** : 광진구 관내(도로변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전주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 **보상금 지급제외 현수막**

- 타 시, 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 육교 · 교량 등 기타 위험지역에 게첨한 현수막
- 건물외벽, 아파트 단지 및 주택 · 상가내에 부착된 현수막
- 지정게시대에 게첨한 현수막, 선거용 및 공공용 현수막 등 적용배제 대상 현수막

-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 2016. 3.15~3.21(7일간)

○ 모집인원 : 30명 이내

○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 광진구 거주 주민이면서 신체 건강하고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이 가능한 주민

○ 모집방법 : 공개모집(구청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이용)

○ 참여자 선발 :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참여 대상자를 확정

※ 2015년도 사업 참여자 선발 우대

○ 선발자 통보 : 2016. 3.23(화) 개인별 유선통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참여자 전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서울시 주관 참여자 안전교육 시행

- 수거 및 정비대상 불법현수막의 범위와 보상금 지급조건
- 불법현수막 수거시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정비방법

○ 참여자 개인 소유의 장비(커터기, 카메라, 차량 등) 활용

○ 정비대상 현수막에 대한 전·후 사진을 촬영 후 정비

○ 단속시간은 09:00 ~ 18:00(일출 전 및 일몰 후 단속지양)

○ 참여자는 조별(3인 1조) 편성·운영

○ 제거한 불법 현수막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정지역에 모아서, 구청 정비차량을 이용하여 일괄 수거

정비 현수막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구)

○ 구에서 사진 수합 및 수량 확인 등 관련자료 확인후에 불법 현수막 설치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불법 현수막 보상금 신청·지급

○ 지급기준

- 일반형 현수막 : 2,000원 / 족자형 현수막 : 1,000원
- 1인/월 3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보상금 지급신청서, 정비사진(위치기재)함께 제출

-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본인(참여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작성
- 불법 현수막의 정비 전·후사진(파일) 첨부하여 메일등으로 제출

○ 신청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광고물관리팀)

○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은 신청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정비물량 확인후 신청자(참여자)에게 무통장 계좌입금

< 수거보상제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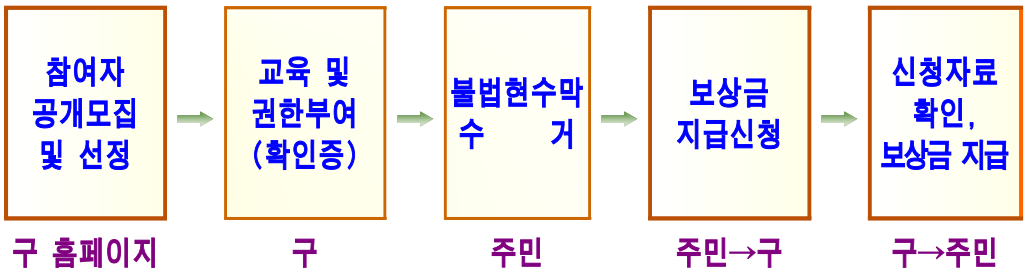

추진일정

○ 2016. 3.10~ 3.14 : 추진계획 수립

○ 2016. 3.15.~ 3.21 : 수거보상 참여자 모집공고

○ 2016. 3. 중순 : 참여자 확정 및 보험가입

○ 2016. 3. 말 : 불법 현수막 참여주민 교육

○ 2016. 4. 중순 : 수거보상제 시행

소요예산 : 45,000천원(시 특별교부금)

○ 수거보상 : 40,000천원

○ 기타비용 : 5,000천원

- 홍보 및 교육비 3,800천원, 보험료 1,200천원

※ 상반기(3~7월) 60%, 하반기(8~12월) 40% 지원

Ⅳ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협조 및 홍보
  - ○ 정책홍보담당관 : 주민홍보 협조(소식지, 신문, 케이블 방송등)
  - ○ 기획예산과 : 구 홈페이지 고시 · 공고
  - ○ 동 주민센터 : 모집 공고문을 동 게시판에 게시 · 홍보
- 수거보상제 예산확보 : 간주처리
- 수거보상 참여 주민 명단 제출 : (구→시)
- 매주 월요일 불법현수막 정비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제출(구→시)

붙임 : 1. 수거보상제 모집공고(안) 1부
2. 수거보상 사업 서약서 1부
3. 수거보상제 참여신청서 1부
4.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자 명단 1부
5. 수거보상제 단속원증(안) 1부
6.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7. 수거보상금 접수증 1부
8. 수거보상제 정비대장 1부
9.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보고서 1부. 끝.